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 호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

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8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명　　칭: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

2. 결정 근거: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

3. 적용 기간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
4. 주요 내용

○ **생활임금 수준**: 시급　11,436원

- 월급 환산시 2,390,124원(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, 월 209시간 기준)

※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

○ **생활임금 적용대상**

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

※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

② 서울특별시 투자, 출자·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

③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(시비100%)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

※　수익창출형,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